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97호

『인천광역시 은유탈충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4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은유탈충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함.
- 나. 시설물 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 도래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 시설 위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 등)

나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상을 정의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. (안 제4조)

다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은유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은유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은유탈춤전수관(이하 “전수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은유탈춤전수관”으로, “운영에 관한”을 “운영에 필요한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전수관”을 “은유탈춤전수관(이하 “전수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법인·단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”를 “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”로, “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

다)”를 “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)”를 “(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수탁관리자는”을 “수탁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수탁관리자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”을 “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관리·운영비보조)”를 “(관리·운영비 보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수탁관리자에게”를 “수탁기관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은율탈춤(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)의 전승 보존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기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<u>은율탈춤전수관(이하 “전수관”이라 한다)</u> 을 설치하고 그 관리 <u>운영에 관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은율탈춤전수관</u> ----- ----- <u>운영에 필요한</u> ----- -----.
제2조(위치) <u>전수관</u> 은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7-4에 둔다.	제2조(위치) <u>은율탈춤전수관(이하 “전수관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제3조(사업) 전수관은 다음 <u>각호</u> 의 사업을 행한다. 1. ·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	제3조(사업) ----- <u>각호</u>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
제4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전수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<u>단체</u> 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법인 · 단체</u> 에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 ③ 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. 제5조(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)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. 제6조(손해배상)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수관 및 그 부속물 등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 제7조(위탁관리의 취소)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-.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-----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-----.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·운영을 재위탁 하지 못한다. 제5조(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) 수탁기관은 -----. 제6조(손해배상) 수탁기관이 -----. 제7조(위탁관리의 취소) -----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(<u>관리·운영비보조</u>) 시장은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의 일부를 <u>수탁</u>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.	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제8조(<u>관리·운영비 보조</u>)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 <u>필요한</u> ----- <u>수탁기</u> <u>관에</u> -----. 제9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 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- 제2조(정의) - 제9조(협약체결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지방자치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